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75
----------	------

제출년월일 : 2016. 8. 17.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 개발을 위해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법 제39조의20(2015. 8. 11. 개정) 및 시행령 제44조의18(2016. 2. 12. 시행)

주요내용

- 가. 재생추진협의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5조)
-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다. 재생추진협의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라. 재생추진협의회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6. 5. 30. ~ 6. 20. (21일간)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4

< 블임 1 >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안산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안산시의회 의원
5. 안산시 소속 공무원
6.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7.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8.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간사) 추진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산업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산업정책과장 이 정 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생혁신계장 전 광 식
	담당자 성명·전화	이 광 재 (행정 2856)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중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등) ①~② (생략)</p> <p><u>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u></p>	<p>제3조(구성 등) ①~② (원안과 같음)</p> <p><삭제></p>
<p>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p> <p>2. 질병, 장기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p> <p>-----</p> <p>-----</p> <p>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p> <p>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p> <p>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p> <p>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p> <p>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득을 취한 경우</p> <p>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p>